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용어 정비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8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2

I. 개요

1.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3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성적 불쾌감</u> ----- ----- -----.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생략)

② (생략)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6. -----

-----성적 불쾌감-----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

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 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 ----- <u>성적 불쾌감</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¹⁾,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²⁾,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营业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주소를 의미한다),

□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⁵⁾

□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법률상 표현을 피해자 관점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보다 포괄하고, 부끄러움이라는 특정한 감정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수치심’은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는 반면, ‘불쾌감’은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을 의미하므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이나 떳떳하지 못함과 같은 특정한 감정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음.⁶⁾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황재하. (2022. 5. 3.).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 수치심 아닌 ‘불쾌감’으로 변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858000004>

5)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2022. 5. 25., 3면.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6.6.29.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 참고로, 같은 취지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⁷⁾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497

7) [22195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